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제 103 호
2018년5월31일(목)

여수시보

시정방침

- 1. 함께하는 소통시정
- 1. 활력있는 지역경제
- 1. 수준높은 교육복지
- 1. 앞서가는 해양관광
- 1. 걱정없는 안전사회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목 차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18-159호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고시 /3
- 여수시 고시 제2018-162호 공유수면 점용 사용 승인 고시(화정면 마과항 벚등 부잔교 설치사업) /4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18-1329호 도로지정 공고[율촌면 신평리 232/ 232-1/ 233-15] /5
- 여수시 공고 제2018-1337호 도로지정(변경)공고(화양면 용주리 478-7) /6
- 여수시 공고 제2018-1344호 제26회 한중일 주니어종합경기대회 통역요원 모집 /7
- 여수시 공고 제2018-1346호 영업용 화물자동차 직권말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9
- 여수시 공고 제2018-1347호 영업용 화물자동차 직권말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1
- 여수시 공고 제2018-1348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공고 /13

【기 타】

- 여수시 규칙 제2018-685호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4
- 여수시 규칙 제2018-686호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23
- 여수시 규칙 제2018-687호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9
- 여수시 규칙 제2018-688호 여수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0

회								
람								

여수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시 고시 제2018 -/59 호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8.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개요

- 공시(가격) 기준일 : 2018. 1. 1.
- 공 시 일 자 : 2018. 5. 31.
- 결정·공시 필지 수 : 252,514필지

2. 공시사항

- 개별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 필지별 결정 내역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및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3. 결정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기 간 : 2018. 5. 31. ~ 7. 2.
- 장 소 : 여수시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FAX
-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가능

4.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여수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고 그 결과를 2018년 7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 5.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659-3361~ 33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31일

여 수 시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울촌면 신평리 232번지 상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m ²)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 고
계		27m	3m	82m ²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울촌면 신평리	232 번지	7m	3m	24m ²	“	
	232-1 번지	18m	1.5m	23m ²	“	
	233-15 번지	22m	1.5m	35m ²	“	
이 하 빈 칸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5. 30.

여 수 시 장

도로지정(변경) 공고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478-7번지 건축신고(변경)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변경)합니다.

1. 도로지정(변경) 공고 내역

도로 위치 (화양면 용주리)	도로길이(m)	도로너비(m)	도로면적(m ²)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 고
계	272	6	1,457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478-4	40	6	254		
481-3	28	6	125		
481-9	18	6	72		
481-11	117	6	734		
481-18	39	6	146		
483-4	10	6	56		
483-7	13	6	50		
491-2	7	6	20		

* 당초 공고번호 2016-2317호, 제2018-95호

2. 변경사유 : 지적공부 확정에 의함(도로면적 변경없음)

3.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4. 기타사항

가.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
과(061-659-4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5. 31.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고 제2018-1344호

제26회「한·중·일 주니어종합경기대회」통역요원 모집

1. 모집기간 : 2018. 6. 1.(금) ~ 6. 14.(목)
2. 모집인원 : 50명(중국어 25, 일본어 25)
3. 응시자격 : 중국어 또는 일본어 통역이 가능하고 통역기간 여수에 거주가 가능한 자
4. 근무조건
 - 가. 근무기간 : 2018. 8. 23(목)~8. 29(수)/ 7일간
 - 나. 근무시간 : 종목별 경기 일정 및 시간 등에 따라 유연 근무
 - 다. 근무지 : 여수시 일원
 - 다. 혜택
 - 수당 : 1일 100,000원
 - 숙식(필요시 출퇴근 가능), 티셔츠 제공
5. 통역요원 역할
 - 가. 임원단 통역 요원 : 공식행사, 회의 등 통역
 - 나. 선수단 통역 요원 : 경기진행, 문화탐방, 대회관련 정보제공 등 통역
6.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7. 접수기간 및 접수처
 - 가. 접수기간 : 2018. 6. 1.(금)~ 6. 14.(목).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나.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온라인, 팩스 접수
 - 주소 :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오림동, 진남스포츠센터 2층) 체육지원과
 - 팩스 : 061)659-5809, 이메일 : shlee66@korea.kr

※ 방문 접수시 공휴일 및 토요일은 미접수, 온라인 및 팩스 접수시 반드시 전화 확인
8. 기타 유의사항
 - 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일자 개별 통보
 -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상기 모집요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다. 기타 사항은 여수시 체육지원과(061-659-3271) 문의 바람

2018. 5. 31.

여 수 시 장

공 시 송 달 공 고

부정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영업용 화물자동차 직권말소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5. 31.



1. 공고기간 : 2018. 5. 31. ~ 2018. 6. 14.(15일)
2. 사전통지 내역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차량 직권말소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차량번호	차명	소유자	등록번호	주소	반송 사유	위반 사항
전남80바7**0	대우15.5톤 장축카고트럭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전남80바7**1	한국쓰리축 6.5톤 트럭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전남80바7**3	현대11톤카고트럭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전남80바7**7	트라고(TRAGO)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전남80바7**8	대우19톤카고트럭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전남80바7**2	현대4.5톤 초장축카고트럭(터보)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전남80바7**3	한국상용6.5톤트럭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전남80바7**4	한국상용7.5톤트럭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전남80바7**3	현대슈퍼트럭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전남80바7**5	한국상용8톤트럭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전남80바7**9	현대18톤 초장축카고트럭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전남98바4**0	스카니아트랙터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전남98바5**4	대우트랙터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전남98바5**6	Actros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전남98바5**7	FM12 6X2 트랙터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전남98바5**8	스카니아트랙터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전남98바5**9	TGX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전남98바5**2	스카니아트랙터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전남98바5**3	스카니아트랙터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전남98바5**6	Actros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전남98바5**7	TGX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전남98바5**8	ACTROS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전남98바5**0	Actros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전남98바5**1	스카니아트랙터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전남98바5**2	스카니아트랙터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전남98바5**3	TGX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4. 의견제출 및 문의

- 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직권말소를 사전통지하오니
- 나. 공고대상자는 직권말소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에 여수시 교통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서면제출 시, 제출 기한 내에 도착하여야 함)
-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교통과(☎061-659-41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부정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영업용 화물자동차 직권말소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5. 31.



1. 공고기간 : 2018. 5. 31. ~ 2018. 6. 14.(15일)
2. 사전통지 내역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차량 직권말소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차량번호	차명	소유자	등록번호	주소	반송 사유	위반 사항
전남80바9**1	한국상용8톤트럭	(주)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전남80바9**2	포터 II (PORTER II)	(주)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전남80바9**3	트라고엑시언트 (TRAGO XCIENT)	(주)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전남80바9**4	한국상용 4.5톤트럭	(주)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전남80바9**5	동양7.5톤 크플러스트럭	(주)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전남80바9**6	트라고(TRAGO)	(주)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전남80바9**7	한국상용 4.5톤트럭	(주)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전남80바9**8	대우25톤장축카고트럭	(주)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전남80바9**9	트라고엑시언트 (TRAGO XCIENT)	(주)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전남80바9**0	한국쓰리축 6.5톤트럭	(주)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전남80바9**1	현대5톤트럭	(주)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전남80바9**2	한국상용 7.5톤카고트럭	(주)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전남80바9**3	현대16톤초장축카고트럭(터보)	(주)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전남80바9**4	한국쓰리축 7.5톤트럭	(주)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전남80바9**5	한국상용 7.5톤트럭	(주)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전남98바6**3	스카니아트랙터	(주)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전남98바6**1	스카니아트랙터	(주)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전남98바6**5	현대트랙터	(주)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전남98바9**4	FH 트랙터	(주)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취인 불명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4. 사전통지 내역

- 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직권말소를 사전통지하오니
- 나. 공고대상자는 직권말소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에 여수시 교통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서면제출 시, 제출 기한 내에 도착하여야 함)
-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교통과(☎061-659-41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

「수산업법」 제14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

면허 번호	연장 허가 번호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적 (ha)	어장 위치	면허기간	연장허가 기 간	수산자원 조성금 (천원)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10283	2018-18	마을어업	40	삼산 손죽	2008.06.27. 2018.06.26.	2018.06.27. 2028.06.26.	-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손죽 어촌계	
10284	2018-19	마을어업	20	삼산 손죽	2008.06.27. 2018.06.26.	2018.06.27. 2028.06.26.	-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손죽 어촌계	
10285	2018-20	마을어업	30	삼산 손죽	2008.06.27. 2018.06.26.	2018.06.27. 2028.06.26.	-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손죽 어촌계	
10286	2018-21	마을어업	20	삼산 손죽	2008.06.27. 2018.06.26.	2018.06.27. 2028.06.26.	-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손죽 어촌계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18. 5. 31.

여 수 시 장

2018년 제5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와 심의·의결을 거친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5월 31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규칙 제585호

붙임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인구증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는 대상”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여수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구 유입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및 기업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심의대상) 조례 제8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인구증가시책 인센티브 지원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사항
2. 인센티브 지원 중단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제4조(지원계획 공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인구증가시책 인센티브(이하 “인센티브”라 한다)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된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조례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조례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에 대한 지원여부 및 그 내용은 지원계획 공고일 이후에 여수시로 주소 이전한 신청인 소속 구성원의 인원수에 따라 결정한다.

제6조(지원자 관리 등) ① 시장은 신청인의 이름 또는 단체명, 지원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센티브를 지원 받은 개인 및 기관등에 대하여 여수시 전입자의 거주 및 재직 사실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인센티브 지원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거주 및 재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읍·면·동 및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기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등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관등이 사유를 소명하지 않고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인센티브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관등에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려는 경우 청문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인센티브 지원을 신청한 기관등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지원을 신청할 당시의 규칙을 적용한다.

2018년 제5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5월 31 일

여수시장  

여수시 규칙 제585호

붙임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공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마이스산업 육성 인센티브를 지원하려는 경우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여수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3조(지원 신청) ① 국내·국제회의 또는 전시회를 개최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인센티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내·국제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국내·국제회의 개최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전시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전시회 개최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원 신청한 국내·국제회의 또는 전시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사업결과 보고) ① 신청인이 국내·국제회의를 개최한 경우 당해 회의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내·국제회의 개최 결과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② 신청인이 전시회를 개최한 경우 전시회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시회 개최 지원금 지급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
2. 전시회 개최 결과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

제5조(보완요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국내·국제회의 개최 지원 신청서

주최 단체명	국문) : 영문) :				
단 체 연 락	대표자		대표전화		
	주 소				
	담당자	이 름(국문) (영문) 전 화 핸드폰 홈페이지	직 위(국문) (영문) 팩 스 E-mail		
행 사 명	국문 : (개최주기 : 년) 영문 :				
기 간	년 월 일 ~ 월 일 (박 일)				
장 소					
주 최					
주 관					
규 모	전체() 개국 명/내국인()명, 외국인 ()명				
부대행사 (전시회)	참가업체 수		전시 면적	m ²	
관 련 국제기구	기구명 (국문) (영문) 인터넷 주소 :				
사업비	구 분	총사업비			
	금 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지원기관				
상기와 같이 국제·국내회의 개최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 : 1. 공문, 지원신청서, 행사계획서(행사일정표 포함)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택1 사본 1부. ※ 참고자료 : 이전 개최행사 증빙자료, 단체 소개서 등(임의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전시회 개최 지원 신청서

I. 전시회명			
II. 전시회 개요			
전 시 기 간			
전 시 품 목			
전 시 장 소			
전 시 면 적		총면적 : m ² (실내 : m ² 실외 : m ²)	
전시회 역사		개최회수 : 회 (최초개최: 년, 개최주기 :)	
III. 전시회 성과 및 목표			
구 분	전회 실적		2018년 계획
부 스 규 모	총 부스(해외: 부스)	총 부스 (해외: 부스)	
참 가 업 체	총 개사(해외 : 개사)	총 개사(해외 : 개사)	
참 관 객 수	총 명(해외 : 명)	총 명(해외 : 명)	
바 이 어 수	총 명(해외 : 명)	총 명(해외 : 명)	
IV. 인증여부	인증기관		인증년도
V. 사업예산액(백만원)			
총 예 산			
VI. 신청기관			
신청기관명			
주 소			
성명/직위		전 화	
팩 스		E-mail	

년 월 일

신청기관 및 대표자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서 약 서

본 사는 「20 년 여수시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대상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본 사(인)는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에 사실만을 기재하고, 제출한 자료내용의 진위에 책임을 진다.
2. 본 사(인)는 지역 전시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본 사(인)는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후라도, 신청 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심사위원회에 대한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어떠한 제재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귀하

전시회명	국 문	
	영 문	
서약자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인)

국내·국제회의 개최 결과보고서

구	분	내 용			
개 최 결 과	행 사 명	국문) : 영문) :			
	기 간	~			
	장 소				
	주최단체				
	주 관				
	규 모	개국 명 (외국인 참가자 : 명)			
	개최주기	정기 : 매년 부정기 : 년			
	참가자 명단	※ 국내·외 참가자(주요인사) 리스트 별도 첨부			
	숙박업소 투숙현황	숙박업소명 : ① 1박 : 이용 객실 수 : ()실, 숙박인원()명 ② 2박 : 이용 객실 수 : ()실, 숙박인원()명			
정 산 결 과	사 업 비	총사업비	자부담	보조금	기 타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집행내역	항 목	금액(천원)	산출근거	
		교통비(항공,KTX등)			
		임차비(회의장,연회장)			
		임차비(셔틀버스)			
		숙박비			
		식음료(호텔내연회등)			
		식음료(호텔밖맛집등)			
		관광입장료			
광고물, 인쇄물비					
기 타					
상기와 같이 국제·국내회의 개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 : 1. 회계증빙서 (여수지역 사용 세금계산서, 견적서, 법인카드영수증, 입금증 등) 2. 국내·국제회의 숙박 확인서 및 숙박확인 리스트 3. 단체명(법인명, 기관명)으로 된 통장 사본 4. 참가자 명단 5. 사진대장(개회식, 일자별 세션, 관광 등 각 1~2장) 등(별지)					

[별지 제4-2호 서식]

숙박확인 리스트

구분	일 자	예약자 (이름)	입 실~ 퇴실일자	숙박 일수	숙박 인원	비 고 (휴대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별지 제4-4호 서식]

사 진 대 장

행사일시		설 명	
사진 1			
행사일시		설 명	
사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여수시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단체의 계좌번호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2017년도 여수시 MICE(회의) 개최 인센티브 지원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인센티브 자료관리 종결시점까지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2017년도 여수시 MICE 개최 인센티브 지원 행사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II.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등)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 항목 : 소속,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핸드폰번호)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2017년도 여수시 MICE(회의) 개최 인센티브 지원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인센티브 자료관리 종결시점까지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2017년도 여수시 MICE 개최 인센티브 지원 행사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기관·단체명

대표자

(인)

【별지 제6호 서식】

전시회 개최 지원금 지급 청구서

지원대상 행사내용

- 행사명 :
- 행사기간 :
- 주최·주관 :

지원금 지급처

업체명		대표자	
주소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전화)	휴대폰)	

항목별 지원금 내용

구분	지출내역	지원요청액	비고
계			
홍보비			
전시장치비			
임차료			

청구내용

청구금액	금 원정(₩ 원)	비고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위와 같이 「여수시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1. 통장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인감증명 1통.

년 월 일

청구자(행사 주최·개최자) : 성명(단체명)

①

여수시장 귀하

2. 개최결과

개최결과 잘된 점 및 좋은 점

개최 중 문제점 및 애로사항

여수시 및 여수 MICE산업 발전을 위한 제안사항

3. 개최지 선택시 요인별 영향력 조사 및 여수시 평가

* 다음 선택요인이 여수시를 행사 개최지로 선택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평가해 주십시오.
(해당 항목에 √ 표시)

요인별	매우 작다		보통		매우 크다					
	①		②		③		④		⑤	
	고려사항	여수								
1) 개최도시의 행사 개최에 적합성	<input type="checkbox"/>									
2) 기존에 행사를 개최했던 경험 유무	<input type="checkbox"/>									
3) 개최도시 내 현지기관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4) 개최도시 내 풍부한 관광자원	<input type="checkbox"/>									
5) 개최도시의 안전성	<input type="checkbox"/>									
6) 개최도시의 접근성	<input type="checkbox"/>									
7) 개최도시의 기후	<input type="checkbox"/>									
8) 개최도시 자체가 주는 매력	<input type="checkbox"/>									
9) 주변 지인의 추천	<input type="checkbox"/>									
10) 개최도시의 다양한 회의개최시설	<input type="checkbox"/>									
11) 개최도시의 다양한 숙박시설	<input type="checkbox"/>									
12) 개최도시 내에서 다양한 사회활동	<input type="checkbox"/>									
13) 컨벤션시설의 지원서비스	<input type="checkbox"/>									
14) 기타(구체적으로 기술)										

2018년 제5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5월 31 일

여수시장  

여수시 규칙 제687호

붙임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구성)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직원을 둘 수 있다.

1. 센터장
2. 사무국장
3. 팀장
4. 팀원(사무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이하 “센터 직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센터 직원의 채용) ① 시장은 센터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채용해야 한다.

② 센터 직원의 근로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근무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 1통(경력자에 한함)
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5.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공립 또는 사립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
6.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센터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여수시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센터 직원의 복무 및 임무) ①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여수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② 센터 직원별 주요 임무는 별표 2와 같으며 그 밖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센터장이 정한다.

제5조(센터 직원의 해임) ① 시장은 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센터 직원이 사직을 원할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② 시장은 센터 직원을 해임하려는 경우 해임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해지 날짜와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제6조(보수) ① 센터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센터 직원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재정 및 회계) 센터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협의회 구성·운영 등)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주민제안사업) 시장은 주민제안사업(이하 “제안사업”이라 한다)이 도시재생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 간 교류활성화 및 갈등해소를 위해 주민 스스로 추진하는 사업

2. 문화, 예술, 관광, 복지, 경제 및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수요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3. 마을에 대한 관심과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
4. 마을의 역사, 문화 및 지역성 등을 살린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도시재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지원신청) ① 제안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이나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사업을 신청하는 주민이나 단체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대표자를 포함한 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선정심사 및 통지) ① 지원신청한 제안사업의 선정심사는 도시재생 위원회 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사업을 심사한 후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1.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지원 사업비 산출기초의 적정성 여부
3. 추진 주체의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시의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안사업 신청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2조(사업 내용의 변경) 제안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 절차는 제11조를 따른다.

제13조(전문가 등의 참여) ① 시장은 제안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등을 선정심사 및 제안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융자금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융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15조(사업비의 집행) ①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민이나 단체는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보조금을 관리해야 한다.

② 주민은 관계법령과 보조금 지원 결정내용 및 조건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채용 자격기준(제2조관련)

직급(책)	채 용 자 격	비 고
센 터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기타 도시재생 관련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지역사회에의 신망과 리더십을 겸비한 사람 	
사무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팀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팀 원 (사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관련 분야

- 도시 분야 : 도시공학, 도시계획, 주거환경, 지역개발 등
- 건축 및 조경분야 : 건축학, 조경학, 정원학 등
- 경관 및 디자인분야 : 경관디자인, 환경디자인, 공공디자인 등
- 문화 분야 : 예술, 관광, 역사 등
- 경제분야 : 시장, 상권, 산업 등
- 사회적 경제분야 :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복지(사회)분야 : 주거복지, 노인, 취약계층 등 분야별 복지
- 거버넌스 분야 : 대학, 연구소, 마을만들기 등

관련 학과

- 도시분야 : 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주거환경학과, 부동산학과, 토목공학과, 지역시스템공학전공, 지역개발전공, 지역건설공학과 등
- 건축 및 조경분야 :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조경학과, 조경디자인학과 등
- 경관 및 디자인분야 : 산업디자인학과, 공간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학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등
- 문화 분야 : 문화관광학과,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관광개발학과 등
- 경제 분야 : 경제학과, 경제금융학과
- 사회적 경제분야 : 시민사회.NGO 학과, 지역사회과학부
- 복지(사회)분야 : 사회복지학과,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 거버넌스 분야 : 글로벌거버넌스학과

[별표 2]

센터장 및 사무국 직원 임무<사무분장>(제4조관련)

직 책	임 무	비 고
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 관련 시책 연구개발 ● 도시재생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사무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연간 사업계획 수립 ● 도시재생 관련 사업(프로그램) 개발 ● 도시재생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운영 ● 예산회계 운영 ● 센터 시설 관리 ● 센터직원 복무관리 	
팀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 관련 사업(프로그램) 추진 및 홍보 ● 도시재생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주민교육 지원 ● 지역 네트워크 운영 	
팀 원 (사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 홈페이지 운영 ● 도시재생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문서관리 ● 센터 내 각종 비품 관리 	

[별표 3]

센터장 및 사무국 직원 보수 지급기준(제6조관련)

구 분	센터장	사무국장	팀 장	팀 원(사무원)
급여기준	임기제 공무원 5~6급(상당) 하한액	임기제 공무원 6~7급(상당) 하한액	임기제 공무원 7~8급(상당) 하한액	임기제 공무원 8급(상당) 하한액

[별지 제1호 서식]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 신청서(제10조관련)

모임명		대표자	
모임구성원	명	연락처	
		이메일	
대표자 주소			
사업명			<input type="checkbox"/> 마을가꾸기 <input type="checkbox"/> 지역공동체
사업목적	○		
사업기간	20 . . . ~ 20 . . .		
사업위치	여수시		
사업내용	○ ○ ○		
사업비 (예산계획)			

위와 같이 『20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주민 대표자 / 모임명 : (인)

여수시장 . 여수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귀하

2018년 제5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 의 심의·의결을 거친
여수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5월 31 일

여 수 시 장

주영환



여수시 규칙 제688호

붙임 여수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여수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수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같은 법 시행령”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하수행정팀장”을 “하수시설팀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지방공기업법령”을 “지방공기업 관계법령”으로,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0조 단서 중 “500천원”을 “50만원”으로 한다.

제21조 중 “「감사원 계산증명 규칙」”을 “「계산증명규칙」”으로 한다.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